改正 捜索·救助(SAR)協約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남 상 욱* · 임 동 철**

A Study for Amendment of the Domestic Law on the Revised SAR Convention, 1979

Abstract

The Maritime SAR Convention, 1979, is a kind of convention of adopting SAR policies agreed internationally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a human loss or property damage by measuring a pre-arrangement and, further in case of a inevitable occurrence by conducting a rapid SAR operation.

The above Convention has remarkably devoted improving a global SAR structure. However, the developed technology on the parts of shipbuilding, communication, and the experiences of massive marine casualties.

The amended SAR Convention by IMO puts the aims to be able to conduct a expeditious and efficient SAR activities by maintaining a legal or administrative arrangement appropriate to All parties and making a international standard.

Korea as a party of the Convention has responsibility to perform it faithfully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 namely Lifesaving and Relief Law.

For the reasonalble achievment of the Convention, the writer suggest the following guidelines to adopt as to domestic law in order to efficient implementation.

Firstly, the name of the existing law, namely 「Lifesaving and Relief La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전공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교수

w」, is required to change as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Relief of the survival Law」 in order to express a clear character for the faithful implementation.

The amended Convention has its purpose of global SAR operation by establishing a domestic legislative regime appropriately for coastal sea.

And also to perform an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Plan for mutual cooperation.

In this connection, a considerated name is required to both satisfy the faithfulness of the revised Convention and clarify the character of the law.

Secondly, some new terms were added on the definition of previous SAR Convention, 1979. Such addition as Search, Rescue, Search and rescue service, Search and Rescue facility and On-scene co-ordinator is required to define on the existing domestic law.

Thirdly, in order to adopt such amended contents, the general coordination by Head of RCC H/Q to the relevant authorities in each country is required to strengthen his the right of coordination by expressing such articles on the law, also a new article of responsibility to the Head of RCC H/Q is additionally required to give such a coordination against SAR accidents concerning the Korean flagging all the ship or aircraft out of Korean SAR region.

Fourthly, for the effective or faithful purpose of SAR spirit, a new article or amended intention to the existing article concer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ensure the complete implementation for SAR matters. Such articles are deemed to involve the following contents such as joint coordination between foreign RCCs, right of decision-make for assistance on the request of foreign RCC, the right to make an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RCCs and exchange of SAR information etc..

Fifthly, for the linkage of cooperative SAR operation, Coordination with aeronautical services, development of common procedures and cooperative structure etc. are requested to express on the law as a form of article, and other details on the parts of practical operation might take into

Collection

consideration a legal regime as a form of joint ministry ordinance

Finally, a details on the emergent refuge at coastal sea, so to suggest as a example, the protection of the refuged foreign vessel, a patrol to watch whether keeping a national law of the coastal country or performance of order from the relevant authority etc. are requested to express on the law. The revised SAR Convention is not entered into force yet, but after a year, exactly on January 1, 2000, it shall be entered into force internationally. Accordingly, we nee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levant domestic legislative regime for SAR spirit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as a Party of the SAR Convention, 1979. The writer is recalling that the American poet Robert Frost said, that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urs. Therefore the revised Convention will make all the Parties make good neighbours.

1. 硏究의 目的

오늘날 世界 交易量의 대부분은 해상에서 선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박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때문에 불가항력적인 海難의 蓋然性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海上交通量의 增加, 선박의 大型化·高速化 및 관련 기술·장비의 지속적 革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난사고는 規模도 대형화되고 발생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선박 자체의 損害, 人命의 死傷, 貨物損失 및 海洋環境汚染 등 막대한 被害를 내고 있다.

따라서 선박이 해상에서 遭難에 처했을 때 선박과 기타 재산을 迅速히 救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海難救助가 要求되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제도가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에서는 이러한 법적제도를 국제표준화하여 효율적으로 履行하기 위한 각종 協約과 決議書 등을 採擇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1979년 海上에 있어서의 搜索 및 救助에 관한 國際協約(SAR Convetion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이하 "SAR협약"이라 한다)도 그 중의 하나이다. 1979년 SAR협약은 해난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수색·구조작업을 實施함으로써 人的·物的 損害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合意된 수색구조정책을 導入한 협약이다. 主要目標는 첫째, 최대 가능한 정도까지 절차의 표준화, 둘째, 각국의 수색구조기관간 직접 접촉 촉진, 셋째, 수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해상 및 항공 구조대간

dCollection

效率的인 協力 保障, 넷째, 필요한 곳에 수색·구조業務의 開發을 위한 指針 제공 등이다.

이러한 1979년 SAR협약은 전세계 搜索救助體制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으나, 선박 및 通信技術의 발달과 1994년 9월 발틱해에서 에스토니아 국적의 Ro-Ro旅客船 "에스토니아호"가 顚覆되어 910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사고를 契機로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海事安全委員會 제65차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發議되고 제66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改正을 論議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船腹量 기준 2,093만 재화중량톤(DWT)으로 세계 8위, 交易量 기준 년간 4억톤 이상으로 세계6위의 해운국으로서 전체교역량의 99.7% 이상을 해상교통수단에 依存하고 있고, 또한 해상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救難體制를 갖추지 못하고 범세계적인 수색구조체제에도 同參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러나 1993년 10월의 "서해훼리호"침몰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 해난사고의 再發 방지와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범국가적인 해상수색구조체제를 構築하고 세계유수의 해운국으로서의 國家位相에 상응하는 국제적 役割과 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제정, 1966년 2월 23일 일부 개정되었던 水難救護法을 1994년 재개정하여 1979년 SAR협약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에 受容함으로써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수색구조체제의 흐름은 각국의 수색·구조장비의 확충에만 주력하지 않고 한 국가가 가진 수색·구조 기술과 장비를 국경을 넘어서 共同活用함으로써 장비가 없는 국가도 차질 없이 수색·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效率化를 圖謀하는 국제협력의 强化추세로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의 흐름을 背景으로 國際海運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1979년 SAR협약의 개정과 관련, IMO내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협약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실행가능하고 바람직한 국내제도에의 受容方向을 提示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2. 硏究의 範圍

本 稿의 연구범위는, 채택 이후 한번도 수정되지 않고 시행해 오던 IMO에서 制定·採擇한 1979년 SAR협약이 최근의 대형 해난사고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로 IMO내에서 논의한 개정내용과 동 협약의 국내법인 현행 수난구호법을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즉, 1979년 SAR협약의 체약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체약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내에서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의 1979년 SAR협약(이하 "구 SAR협약"이라 한다)과, 개정된 1979년 SAR협약(이하 "개정 SAR협약"이라 한다) 그리고 1961년 제정하고 1970년에 개정

dCollection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동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법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1994년에 다시 개정한 현행 수난구호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협약의 실행가능한 수용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3. 연구의 方法

本 稿의 연구 목적과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는 文獻的 硏究方法을 위주로 하였다. 이용한 資料는 1979년 SAR협약의 개정과 관련한 IMO 해사안전위원회의 회의문서 및 回覽文書, 해사안전위원회 산하 무선통신수색구조소위원회 회의자료 및 IMO 관련 간행물 등과 수색구조와 관련한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 해운·해사관계전문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해난심판원 및 건설교통부 항공관제소의 발간자료 등이다.

4. 구성과 내용

이 논문은 6개의 장으로 分類·構成하였는데,

제1장은 序論으로서 연구의 目的과 그 範圍, 方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색·구조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채택된SAR협약의 주요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해사기구의 다른 국제해사협약과 SAR협약이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상호간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함께 각국의 입법례도 살펴보았다.

SAR협약은 1979년 4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최대가능한 정도까지 절차의 표준화, 각국의 수색구조기관간 직접 접촉의 촉진, 수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해상 및 항공 구조대간 효율적인 협력보장, 필요한곳에 수색·구조업무의 개발을 위한 지침 제공등을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동협약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해상수색·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권고를 채택하고 이러한 권고들이 추후 국제해사기구가 수색·구조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기초를 제공하였고 1차단계로서 1969년 상선의 수색·구조에 관한 지침서(MERSAR)가 마련되어 각국에 보급되었다. 이어서 1970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북서태평양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 세미나」에서 국제협약의 제정방침과 국제적 수색·구조기구의 설립계획이 제창되고 1971년 9월 국제해사기구 산하 해사안전위원회내에 국제적 수색·구조계획작서에 관한 전문가그룹(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1973년부터 1977년까지 5년에 걸쳐 SAR협약의 초안을

dCollection

작성하였다. 그리고 1977년 10월 해사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79년 4월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O의 전신) 총회에서 동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의 구성은 전문, 본문(8조), 부속서(6장), 결의서(8개)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핵심부분은 부속서로서 주요내용은 제1장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 각체약국에 대한 의무규정(shall)과 권고규정(should)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5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조직을 통한 수색·구조의무의 실시 및 조정을 위한 조치, 둘째 수색·구조 장비의 조정, 셋째 수색·구조 구역의 획정 및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 넷째 구조대 지정, 다섯째 구조대의 장비와 설비규정이다. 제3장은 국가간 조정과 항공업무와의 조정, 제4장은 수색구조활동의 준비조치, 제5장은 수색·구조활동의 절차로 13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선위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SAR과 관련한 기타 국제조약을 살펴보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10년·1989년 해난구조협약, 1969년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협약,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등이 있으며, 수색·구조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로는 영국은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894)에 언급되어 있고, 미국은 SAR협약자체가 수색·구조와 관련한 기본법령으로 별도의 입법은 없으며,일본의 경우는 해상보안청법에 의하여 수색·구조협약을 집행하고 있다. 끝으로 캐나다는 수색·구조 활동의 근거가 캐나다 해양법(Canada Oceans Act)에 있다.

제3장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약의 개정 背景과 經過 및 그 過程에서의 主要論点들을 소개하고 개정협약과 현행협약을 比較·分析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로 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그 산하 소위원회 및 해사안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승인한 특별회기간 회의에 제출되어 토의된 문서를 중심으로, 개정내용의 추이와 토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최순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협약의 개정배경은 살펴보면 1984년 6월 21일 덴마크가 15번째로 체약국이 됨으로써 협약의 발효규정에 의해 1985년 6월 22일 발효되어 시행되어 오던 협약이 전자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해양관련 각종 장비, 통신설비 등이 발전을 거듭하고, 특히 전세계해상조난안전제도(GMDSS)의 전면시행에 즈음하여 규정을 최신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IMO협약의 체약국이 154개국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SAR협약의 체약국수는 57개국에 불과하여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협약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1994년 9월 28일 발틱해를 항해하던 에스토니아 국적의 로로여객선 "에스토니아"호의 침몰로 910명의 귀중한 인명손실사고를 계기로 IMO에서 긴급문제로서 사고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로로여객선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토한 결과 로로여객선의 복원성을

dCollection

확대 적용하기 위한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개정이 이루어 지게 되면서 동시에 SAR협약의 개정을 해사안전위원회에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특별회기간 수색구조 작업반회의(ISW)에서 공식으로 개정을 논의하게 되었고, ISW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무선통신, 수색·구조소위원회(COMSAR) 제1차회의, COMSAR 제1차회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MSC 제66차 회의, MSC 제66차회의에서 개최를 승인한 제2차 ISW회의, 제2차 ISW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COMSAR 제2차회의, MSC 제68차회의, COMSAR 제3차회의,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를 종합하고, 개정협약의 채택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한 MSC 제69차 회의가 그것이다. 끝으로 현행협약과 개정협약의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을 대비분석하였다.

각각의 회의를 종합하여 보면 신협약은 내용상 상당부분이 과거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구협약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 즉 전세계 공백없는 수색구조활동을 위해 수색구조구역의 획정을 의무하고, 체약국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국가와 협력하여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기본요소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당사국의 SAR지원 요청시 원조제공을 권고하던 것을 의무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수색구조활동을 위해 기관간 약정체결을 권고하던 것을 SAR책임기관에 기관간 운영계획 및 약정체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 구조조정본부에 제공토록 의무화 한 것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적·제도적 차이가 크고 다양하며 각국의 국민정서가 각각 상이하고 SAR이행의 정도나 기술수준도 달라 국제적 통일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수색구조이행환경을 고려해 볼 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맞물리고,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구역획정이 쉽지 않다. 물론, SAR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정신과 협약 부속서 제2.1.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간의 경계획정과 무관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협약정신에만 충실한다면 수색구조구역 획정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는 수색구조와 관련한 회의석상에서 조차도 문서나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국가간의 외교적 고려가 이면에 깔려 있어 그 해결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리고 SAR협약의 개정목적이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가입을 촉진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규정의 강화가 오히려 미가입국의 가입을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사안전위원회 제69차회의에서 의무규정중 일부를 완화하자는 일본의 주장이 현실적인 고려와 협약 개정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은 現行 수난구호법의 法的性質, 沿革, 구성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SAR협약 가입경위와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해상과 항공 수색·구

dCollection

조 組織과 任務를 알아본 후, 수난구호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協定과 指針을 검토하였다.

수난구호법의 법적성질은 공법인 행정법규로서 일반 행정법이며 행정대집행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구성은 총 7장 35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수난구호법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법률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은 수산대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제3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구체적 조항으로서 수난구호의 관할, 응급조치, 중앙구조조정본부등의 설치, 구조대 운영,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수난구호 협력기관과의 협조, 조난사실의 신고, 구조본부의 조치, 항행선박의 구조지원,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및 조난경위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조난통신에 관한 사항, 제5장은 표류물 침몰품의 습득·인도·인도받은 물건의 보관과 공고, 비용의 부담, 소유자가 인수를 포기한때의 처리,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법의 시행일과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색구조체제는 해상과 육상 그리고 항공으로 분리되어, 각각 해양경찰청, 행정자치부 소방본부, 건설교통부 소속의 대구항공교통관제소에 담당하고 있으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협정으로는 한·일간 수색구조협정이 유일하며,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 민간기관간 지침서 성격의 한·중간 어선 해상사고처리 지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해에서의 원활한 수색구조업무의 수행과 중국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한·중간 수색구조협정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5장은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개정협약의 장별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법으로의 受容方向을 模索하였다.

표5-1는 개정협약의 우리나라 법제화 여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써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협약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국내 법제화되지 않은 사항은 별로 없으나,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수용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수난구호활동이 관계법에 의해 장소적으로는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육상까지를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명칭과 내용상의 성격이 불일치 하므로 신협약의 수용과 수난구호법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개칭하여 법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dCollection

둘째, 신협약에 도입된 새로운 용어들을 수난구호법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색구조업무, 현장조정자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조정권을 법적 권한으로 부여할 것을 체약국에 요구하고 있는 신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책임기관의 조정권을 명문화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력활동의 실시 및 조정 권한을 수색구조책임기관에 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해상 및 항공 수색구조업무간의 조화를 위해 해상 및 항공 수색구조활동의 조정, 공동절차개발, 협력체제구축의 근거조항을 수난구호법에 두고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계기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6장은 지금까지 비교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지었다.

5. 결 론

개정된 1979년 SAR협약은 해난이 발생했을 때 조난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갖추어야 할 法的, 制度的 裝置를 규정하고 國際 標準化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責務가 있으며 수난구호법은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협약 내용에 맞추어 實行可能한 방법으로 수난구호법에 受容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水難救護法의 名稱을 개정 SAR협약에 충실하면서 성격을 明瞭히 하기 위해 「해상수색구조및구호에관한법률」로 改稱한다.

둘째, 구SAR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捜索, 救助, 捜索救助業務, 捜索救助施設 및 현장조정자 등의 용어를 수난구호법에 새로 정의하고 현행 수난구호의 정의를 捜索救助와 救護로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수난구호의 意味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SAR협약의 組織 및 調整規定을 수용하기 위해 수난구호법 시행령에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의 임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국내 수색구조기관의 수색구조 활동 참여시 綜合調整에 관한 규정을 보다 强한 調整力 確保를 위해 수난구호법에 명시하고 외국해역에서의 우리나라 선박·항공기의 조난시 중앙구조본부장의 責務에 대한

dCollection

넷째, 국제 수색구조활동의 실시 및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수난구호법은 다른 법률이나 조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여 조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協約의 精神에 忠實하고 實效性 確保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別途의 條項 또는 現行法의 關聯條項을 新設 또는 改正하여 조약의 執行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설 또는 개정되는 조항에는 합동 수색구조활동시의 調整, 외국당사국의 捜索救助支援要請時의 援助提供義務, 기관간 수색구조약정체결권 및 정보교환 관리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상 및 항공 捜索救助業務間의 調和(또는 一致)를 위해 해상 및 항공 수색·구조활동의 조정, 공동절차개발, 협력체제구축의 근거조항을 수난구호법에 두고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계기관 共同部令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개정된 SAR협약은 비록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1년여년 후인 200년 1월 1일

dCollection

둘째, 신협약에 도입된 새로운 용어들을 수난구호법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색구조임무, 현장조정자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조정권을 법적 권한으로 부여할 것을 체약국에 요구하고 있는 신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책임기관의 조정권을 명문화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력활동의 실시 및 조정 권한을 수색구조책임기관에 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해상 및 항공 수색구조업무간의 조화를 위해 해상 및 항공 수색구조활동의 조정, 공동절차개발, 협력체제구축의 근거조항을 수난구호법에 두고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계기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6장은 지금까지 비교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지었다.

5. 결 론

개정된 1979년 SAR협약은 해난이 발생했을 때 조난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갖추어야 할 法的, 制度的 裝置를 규정하고 國際 標準化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責務가 있으며 수난구호법은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협약내용에 맞추어 實行可能한 방법으로 수난구호법에 受容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水難救護法의 名稱을 개정 SAR협약에 충실하면서 성격을 明瞭히 하기 위해 「해상수색구조및구호에관한법률」로 改稱한다.

둘째, 구SAR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搜索, 救助, 搜索救助業務, 搜索救助施設 및 현장조정자 등의 용어를 수난구호법에 새로 정의하고 현행 수난구호의 정의를 搜索救助와 救護로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수난구호의 意味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SAR협약의 組織 및 調整規定을 수용하기 위해 수난구호법 시행령에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의 임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국내 수색구조기관의 수색구조 활동 참여시 綜合調整에 관한 규정을 보다 强한 調整力 確保를 위해 수난구호법에 명시하고 외국해역에서의 우리나라 선박·항공기의 조난시 중앙구조본부장의 責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dCollection

넷째, 국제 수색구조활동의 실시 및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수난구호법은 다른 법률이나 조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여 조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協約의 精神에 忠實하고 實效性 確保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別途의 條項 또는 現行法의 關聯條項을 新設 또는 改正하여 조약의 執行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설 또는 개정되는 조항에는 합동 수색구조활동시의 調整, 외국당사국의 搜索救助支援要請時의 援助提供義務, 기관간 수색구조약정체결권 및 정보교환 관리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상 및 항공 搜索救助業務間의 調和(또는 一致)를 위해 해상 및 항공 수색·구조활동의 조정, 공동절차개발, 협력체제구축의 근거조항을 수난구호법에 두고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계기관 共同部令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개정된 SAR협약은 비록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1년여년 후인 200년 1월 1일이면 발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AR협약의 이념에 합치하고 그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협약과 우리 법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법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이(Hareware), 즉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다.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색·구조장비의 현대화 및 보강,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1) 著書

金基文·林健, 最新改正 電波關係法規解說, 曉星出版社, 1995.
金榮球, 現代海洋法論, 亞細亞社, 1988
朴玲先, IMO業務解說, 海印出版社, 1996.
朴容燮, 海上法論, 螢雪出版社, 1994
삼양무선공업주식회사, GMDSS 통신운용, 1994.
孫珠瑢, 商法(下), 博英社, 1993.
林東喆, 海商法·國際運送法, 曉星出版社, 1996. 3
財團法人 韓國船員船舶問題研究所, 유엔해양법협약.
海運港灣廳, 國際海事機構便覽, 1995.
韓國船級, 最新海上人命安全協約-1994 統合本, 1993.

dCollection

海軍本部, 서해 훼리호 救助作戰, 1994.
行政自治部, 災難收拾事例集 第1集, 1998
海洋警察廳, 海難事故統計分析, 1996.
_____, 日本海上保安廳, 1995.
_____, 海洋警察隊 30年史, 서울 경 인쇄(주), 1984.
_____, 韓國海上救助體制, 月刊搜索研究所, 1995.
_____, 外國海洋警察制度, 國財文化社, 1995.
韓國船主協會,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海研資料 第10號, 1984. 3.
海洋水産部 中央海難審判院, 海難審判事例集(1996.1.1~12. 31), 1997.
海洋水産部, 海洋水産白書, 1998.
海運港灣廳·韓國船級, IMO 제65차 海事安全委員會 會議參加報告書('95. 5. 9~19, 런던 IMO본부), 1995. 9.
_____, IMO 제66차 海事安全委員會 會議參加報告書('96. 5. 28~6. 6, 런던 IMO본부), 1996. 12.

(2) 論文 其他

姜東秀, "水難救護法 改正에 관한 法的 考察", 韓國航海學 第18卷 第14號, 1994.
朴成日, "海難救助法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_____, "改正水難救護法 및 關聯協約에 대한 考察", 韓國海事法學會 海法·海商法 第8卷 第2號, 1996.
白種寶, "海上搜索 및 救助協約의 發效와 우리의 對應方向", 「海運産業研究」, 第24號, 海運産業研究院, 1986. 9.
裵鍾永, "수색·구조發展方案에 관한 研究-海上수색·구조을 中心으로", 海軍大學 卒業論文 1995.
李鍾成, "외국의 해난방지 및 구조체제에 관한 연구", 「해양한국」, 제142호, 1985. 7.
鄭淵炯, "해난구조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제15집", 동아대학교, 1978.
崔宗和·李在鶴, "해상안전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한 법적 대책 - 구난체제를 중심으로", 해난심판원 해난방지세미나, 1990.
崔棟鉉, "우리나라 해상수색·구조제도 개선방향", 해운산업연구원, 1993
_____, "IMO 새로운 해난구조협약 채택", 「해운산업동향」, 해운산업연구원, 1989. 11.
崔宗和·李仲熙·李東錡, "한국이 SAR협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에 관하여 : 어업을 중심으로", 「부산수산대학 논문집」 제36집 별책, 1986. 6
外務部 駐英大使館 公文, 英國(해) 25200-53-1116('95. 9. 11자), 1979년 해상수색 및

dCollection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加入書 寄託.

2. 外國文獻

(1) 著書

庄司和民, 「GMDSSの解說」, 東京, 成山堂, 1990

日本海上保安廳, 海上保安の白書, 平成 3년 11월.

_____, 海上保安の白書, 平成 6년 10월.

_____, 海上保安白書, 平成 8년.

_____, 海上保安六法, 成山堂, 平成 10年版.

中山秀治郎, 共同海損法, 東京, 海文堂, 1970.

Abbott, *Law of Merchant Shipping* (1st ed.,1802), (5th ed.,1827).

Brice, Geofrey, *Maritime Law of Salvage,* London : Stevens & Son, 1983.

Brown, E. 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I,* Introductory Manual, Dartmouth, 1994

Mankabady, Sami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Volume I: International Shipping Rules,* Croom Helm, 1986. Volume II: Accidents at sea, 1987.

Sinhg, Maharaz Nagendra, *International Maritime Law Convention : Vol. 4,* London Stevens & Sons, 1983,

United States Coast Guard, *National Search and Rescue Manual, Volume I, II,* 1986.

(2) 論文 其他

Harris, P. K. C., "HM Coastguard and the Harbour Master", *The Work of the Harbour Master and related Port Management Functions,* UK : The Nautical Institute, 1988.

Kelly, James C., "Proceedings of the Korea-Canada Symposium on Marine Environment - The Management of Marine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The Society of Maritime Safety, 1996.

Collection